

●산림청고시 제2022-85호

「산지관리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
2022년 09월 27일

산림청장

**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**

**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**

1. 관계도면 : 생략 (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,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같음)

가. 보전산지 해제

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		도면의 명칭	도엽의 번호	구역의 표시
인천광역시	강화군	강화017	NJ52-9-9-017	준보전산지
경기도	고양시덕양구	서울045	NJ52-9-11-045	준보전산지
경기도	하남시	수원007	NJ52-9-19-007	준보전산지
경기도	양평군	용두093	NJ52-9-14-093	준보전산지
충청남도	홍성군	홍성063	NJ52-13-10-063	준보전산지

※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「산지관리법」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(<http://www.forestland.go.kr>) 및 토지이음 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
2. 열람장소

보전산지 지정해제 관계 도·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
부 칙

-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보전산지 지정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.